

화재후의 도난 손해

1. 사건의 개요

○○사에서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는 P는 전자제품 재고 및 창고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3개의 보험계약(장기화재보험 2, 주택상공종합보험1)을 1986년 4월과 7월 K사등과 각각 체결하였다. 3개 보험계약 보험금액의 합계액은 건물이 1천5백만원, 전자제품이 1억5백만원에 달했다.

1986년 8월7일 13:52경 위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와 재고동산들이 소실되고 인근 소방서의 출동으로 40여분만에 진화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P는 이 사실을 K사에 통보하였고 K사는 G손해사정 회사에 손해사정을 의뢰, 8월12일 G손해사정회사의 직원이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를 하였다.

G사의 손해사정보고서를 근거로 K사는 건물 4백여만원, 전자제품 1천9백여만원, 임시비용 50만원등 합계 2천4백여만원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이를 P에게 통보하였다. G사의 손해사정보고서를 보면 창고건물이 동년 5월부터 무허가로 세워졌고 가



이 혜 구

〈한국보험공사 조정과장〉

전제품 또한 상당부분이 몇년전에 생산된 구모델의 중고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들 가전제품의 수량은 380여점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량은 P가 ○○시 소방서장에게 화재소실정도를 신고하여 증서로 발급받은 화재증명원상의 수량과 주요품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P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즉, 화재당시 창고안에 1억3천여만원상당의 재고가 있었다는 점과 보험회사측의 손해조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고철장사로 추정되는 자들이 트럭으로 소실품의 상당량을 반출, 도난당했다고 주장, K사에게 보험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K사의 대응은 강경했다. 즉, 도경찰국에 P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P가 재고장부를 위조하고 있는지, 또 P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회신내용은 장부의 위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 도난사실은 신고되지 않았고 소실물 도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조사결과를 얻을 수는 없으나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실품을 자동차에 싣고 간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여 K사의 처지에 도움되는 내용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P는 K사로부터 K사가 산정한 보험금을 일단 수령하였고 잔여액 9천만원 상당액을 더 지급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쟁점

P는 화재당시 창고에 1억3천만원 상당의 재고가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거래장부 및 세무자료로써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K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화재후 소실품, 고철등 너무 많은 부분이 도난

당한 상태에서 손해조사를 한 것이므로 K사는 이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K사는 거래장부 및 세무자료 상 1억3천만원 상당의 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재고가 전부 당해 창고내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로서는 소실잔해를 근거로 한 손해사정결과를 인정하였고 그 금액 또한 소방서발행 화재증명원상의 피해액과 상당부분 일치하여 금액산정상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가 회박한 근거로 1억원 상당액을 도난당했다하여 보상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P의 주장과 같이 화재후 1억원 상당의 상품, 소실품등을 도난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는 화재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화재보험약관 및 주택상공종합보험약관에서 이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P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다.

3. 판정의 요지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K사의 면책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 이유로서 동 위원회에서는 첫째, P의 진술에 의해 작성된 화재증명원상의 소실정도와 K사의 산정손해액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P가 이를 부인하려 하는 것은 이를 쉽사리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정하였고,

둘째, 장기화재보험보통약관 및 주택상공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화재가 났을 때의 도난 또는 분실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한 약관의 취지에 대해 “화재사고와 도난, 분실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에 매우 어렵고 그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 동산등의 일부를 고의로 은폐하여 손해보상을 받고자 할 도덕적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손해에 대해 일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P가 소실된 보험의 목적이 도난, 분실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상품의 도난, 분실 경우에도 화재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실품의 도난, 분실의 경우에만 화재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보상한다는 것은 약관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도 않고 그와 같이 분리 적용할 근거도 없다고 하여 P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였다.

4. 후 설

본건은 화재시나 화재후의 도난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소실품의 도난사실을 피보험자가 국가기관인 경찰의 인정서류(?)등으로 입증하였을 경우 도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화재손해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보상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논란에 하나의 획을 긋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화재보험약관도 이와 관련 “loss by theft during or after the occurrence of a fire”를 면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화재보험약관 또한 이와 동일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약관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가 없고 또 우리나라법계에서도 동 약관의 제정취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본건과 같은 경우 판단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일본의 葛城照三교수는「화재보험에서의 상당인과관계설의 적용」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도난손해가 화재와의 인과관계가 없고 도난에 근인하기 때문에 면책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한 다음, 도난손해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때문에 약관에서는 특히 이를 면책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S.S.Huebner교수 및 石田滿교수도 상기 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 피보험자가 본인의 소유물 관리에 최대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간접적 계몽을 위해서도 동 손해의 면책약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 상기 위원회의 판정은 이러한 학설들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